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두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실태조사)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6.5.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3.28.>
4. 삭제 <2014.3.28.>
5. 삭제 <2014.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2016.5.3.>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8.]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별첨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업비 세출

주요사업 비용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 예술인 근로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사업비 세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적용될 세출

나. 추계 결과

(단위 : 억원)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5	1	1	1	1	1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1차분)	2018년도 (2차분)	2019년도 (3차분)	2020년도 (4차분)	2021년 (5차분)	계
세입	일반회계						0
	소계						0
세출	일반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국 비							0
시비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일반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